

# 성남금토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7.08], 주택관리번호 [2026000321]

■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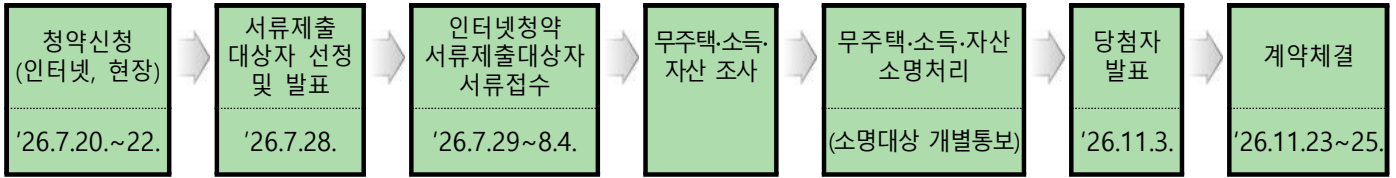
###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금토 A-2블록은 국민임대주택(438호), 영구임대주택(195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공고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국민임대(438세대) : (금회공급 219세대) 우선공급 190세대, 일반공급 29세대 (유보물량 219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 219세대(일반신청 불가)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0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 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성남금토 A-2블록 국민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2026000321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 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중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은 '26.11월말 계약체결 후 '27.01월 입주하는 단지로, 잔금 납부기일이 촉박할 수 있으니 잔금납부 일정 및 입주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잔금납부 불가 및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입주불가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임대조건

- ①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 ② 임대조건이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① 신청접수는 온라인접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② 청약 신청은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전자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 ④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b>[온라인 접수]</b> '26.7.20(월) 10:00 ~ '26.7.22(수) 17:00	'26. 7. 28(화)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26. 7. 29(수) ~ '26. 8. 4(화)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성남금토 A-2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6. 8. 4(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b>일반우편 접수불가</b>	'26. 11. 3(화)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26. 11. 23(월) 10:00 ~ '26. 11. 25(수) 1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6.11.23(월) (10:00 ~ 16:00) ※ (현장계약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b>[현장 접수]</b> '26.7.22(수) (10:00~16:00)  ※ (현장접수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동일)이하인 자가 50%초과~70%(1인 90%, 2인 80%, 이하동일) 이하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인 자로 간주합니다.
-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 건축물등세입자])는 추천받은 자일지라도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 기관추천대상자 중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니, 반드시 현장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기관추천대상자 포함)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26.7.22(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공고문 20페이지 [7. 신청서류] 참조,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6.7.28(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를 참고 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26. 8. 4(화)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현장접수·현장계약 일시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공지 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2.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 ■ 임대대상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m <sup>2</sup> )					공급호수			건물구조 · 난방방식	입주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219)	우선공급 (190)	일반공급 (29)		
				기타공용	주차장						
26	26A	26.96	14.3774	4.1577	16.5037	61.9988	21	20	1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27.1월 (예정)
	26A1	26.96	14.3774	4.1577	16.5037	61.9988					
26D (★하단문구 필독)	26D	26.74	14.2601	4.1238	16.3690	61.4929	2	-	2		
29	29A	29.81	15.8973	4.5973	18.2483	68.5529	52	46	6		
	29B	29.64	15.8066	4.5711	18.1442	68.1619					
	29C	29.84	15.9133	4.6019	18.2667	68.6219					
	29D	29.89	15.9400	4.6096	18.2973	68.7369					
	29E	29.33	15.6413	4.5233	17.9545	67.4491					
	29F	29.83	15.9080	4.6004	18.2606	68.5990					
35 (★하단문구 필독)	35A	35.58	18.9744	5.4872	21.7805	81.8221	5	3	2		
37	37A	37.58	20.0410	5.7956	23.0048	86.4214	77	67	10		
44	44A	44.94	23.9660	6.9308	27.5102	103.3470	62	54	8		
	44A1	44.94	23.9660	6.9308	27.5102	103.3470					
	44B	44.67	23.8220	6.8891	27.3449	102.7260					

★주택형 [26D] 및 [35]의 경우 각 호실을 둘러싼 통행로가 존재하며, 해당 통행로로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감도, 평면도 등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임대조건

주택형	임대조건				전 환 가 능 보증금한도액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5%)	잔금(95%)				
26	25,593,000	1,279,650	24,313,350	214,730	(+) 25,000,000	50,593,000	89,730
					(-) 19,000,000	6,593,000	270,140
26D	25,496,000	1,274,800	24,221,200	214,530	(+) 25,000,000	50,496,000	89,530
					(-) 19,000,000	6,496,000	269,940
29	27,837,000	1,391,850	26,445,150	235,140	(+) 28,000,000	55,837,000	95,140
					(-) 20,000,000	7,837,000	293,470
35	33,855,000	1,692,750	32,162,250	311,320	(+) 37,000,000	70,855,000	126,320
					(-) 24,000,000	9,855,000	381,320
37	48,834,000	2,441,700	46,392,300	314,440	(+) 37,000,000	85,834,000	129,440
					(-) 38,000,000	10,834,000	425,270
44	69,407,000	3,470,350	65,936,650	366,390	(+) 43,000,000	112,407,000	151,390
					(-) 56,000,000	13,407,000	529,720

- **신청접수는 주택형별로 받으며, 주택형 내 세부 주택타입은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됩니다.**  
예)주택형 44 신청 시 주택타입 44A, 44A1, 44B 중 무작위 배정
- 주택타입은 추첨으로 무작위 배정되므로 선택할 수 없으며, 추후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 [26],[26D],[29]에는 신발장, 주방가구(상부장+하부장), 전기쿡탑(2구), 발코니선반이 설치됩니다.
- 주택형 [35],[37],[44]에는 신발장, 주방가구(상부장+하부장), 전기쿡탑(3구), 발코니선반이 설치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타입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타입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샷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 후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할 예정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에 따라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종전 선정된 동일유형(국민임대)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자격

※ 공급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적용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p><b>무주택</b></p>	<p>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공고문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10. 소득·자산 항목 자료 출처] 참고)</p>																	
<p><b>세 대 구성원</b></p>	<p>■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p> <table border="1" data-bbox="233 371 1436 748"> <thead> <tr> <th>세대구성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33 806 1436 1034"> <tbody> <tr> <td>외 국 인 배 우 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r> <tr> <td>외 국 인 직계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태 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td> </tr> </tbody> </table> <p>■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b>중복신청</b>으로 <b>부적격 처리</b>됨.)</p>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 국 인 배 우 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 국 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 국 인 배 우 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 국 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해당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은 보지 않습니다.(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자격검증대상 제외)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입주자격 구분 (「4.입주자 선정」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원)	자동차가액(원)
소득 50% 이하	1인	0인	70%	345,000,000	45,420,000
	2인	0인	60%	345,000,000	45,420,000
		1인	70%	379,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50%	345,000,000	45,420,000
		1인	60%	379,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413,000,000	54,510,000
소득 50% 초과 소득 70% 이하	1인	0인	90%	345,000,000	45,420,000
	2인	0인	80%	345,000,000	45,420,000
		1인	90%	379,000,000	49,960,000
	3인 이상	0인	70%	345,000,000	45,420,000
		1인	80%	379,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413,000,000	54,510,000

###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li> </ul>
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b>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b>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예수금: 잔액</li> <li>•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b>높은 차량가액</b>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 4.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공급대상자별 배정호수

공급 형태	일반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철거민 등	노부모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복합주택	중기근로자	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지원대상부가족	65세이상고령자	파동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자녀가 6세이하인 한부모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26	1	20	1	-	1	-	1	1	1	1	1	1	1	-	4	2	-	5	-	
26D	2	-	-	-	-	-	-	-	-	-	-	-	-	-	-	-	-	-	-	
29	6	46	7	-	3	1	1	1	3	1	2	1	2	-	9	3	2	10	-	
35	2	3	-	-	-	-	-	-	-	-	-	-	-	-	-	-	-	3	-	
37	10	67	22	2	2	1	-	-	1	1	1	-	1	9	4	1	2	18	2	
44	8	54	14	2	1	-	-	-	-	1	1	-	-	9	1	-	2	19	4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관 추천대상 중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유형은 현장접수(7.22(수))만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 면적별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 선정 방법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1인가구 70%, 2인가구 60%)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1인가구 70%, 2인가구 60%) 70% 이하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가구원 수, 출산 자녀 수 가산 적용(■ 입주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참고)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 고
일반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1인 70%, 2인 6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중 미성년 자녀가 많은 사람 → 일반공급 배점 → 추천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점 → 추천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부터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부양가족 수**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미성년 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① 이혼 재혼의 경우

-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신청자의 전혼 자녀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자녀수 인정

② 손자녀를 포함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일 경우에만 인정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7.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li> <li>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li> <li>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li> <li>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li> <li>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li> <li>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li> <li>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li> <li>⑩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li> <li>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li> <li>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자</li> <li>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자</li> <li>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li> <li>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다자녀가구</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p>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b>국가유공자 등</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p>	<p>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li> </ul>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b>영구임대주택 퇴거자</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b>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b>현장접수만 가능</b> )
<b>신혼부부·한부모가족</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등이 적용됨(공고문 14, 15쪽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b>무주택세대구성원</b>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b>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b> ③ <b>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 - <b>신혼부부</b>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b>예비 신혼부부</b>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b>한부모가족</b> : 6세 이하의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자녀의 개념에는 태아 포함
<b>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b>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b>현장접수만 가능</b> )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며 태아포함, 이하 같음)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b>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b>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b>무주택세대구성원</b>(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b>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b> ③<b>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혼부부</b>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li> <li>- <b>예비신혼부부</b>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li> <li>- <b>한부모 가족</b> :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li> </ul> <table border="1"> <tr> <td><b>1순위</b></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td> </tr> <tr> <td><b>2순위</b></td> <td>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td> </tr> <tr> <td><b>3순위</b></td> <td>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td> </tr> </table>	<b>1순위</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b>2순위</b>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b>3순위</b>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1순위</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경우						
<b>2순위</b>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3) 한부모가족						
<b>3순위</b>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1, 2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b>추첨</b>으로 입주자 선정</li> <li>- 제2순위, 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b>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b>으로 입주자 선정(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b>추첨</b>)</li> </ul>						

구 분	3점	2점	1점
① 가구소득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2인 60%)이하
② 미성년자녀수*(태아 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⑤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혼인 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⑥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2세 이하	3세 또는 4세	5세 또는 6세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 하되, 이혼 및 재혼 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

\*\* '③ 성남시 연속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사도로 전출 했던 경우는 성남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이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산정

**유의사항**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당사자 2인 모두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처리).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3.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b>우선공급</b>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우선공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1인 70% 2인 60%)이하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
<b>장애인 우선공급</b>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1인 70% 2인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배점	
<b>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우선공급</b>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인 60%)이하 → 순위 → 배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1순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 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점 없이 추첨으로만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등 세입자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통보 명단에 따름
-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증빙서류 발급 불가 등)시 부적격 처리 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7.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발급기관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는 <b>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b>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부터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p> <p>.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p>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부양가족 수

####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미성년 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 ① 이혼 재혼의 경우

-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신청자의 전혼 자녀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자녀수 인정

#### ② 손자녀를 포함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일 경우에만 인정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방법

#### ■ 인터넷(PC)

#####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인증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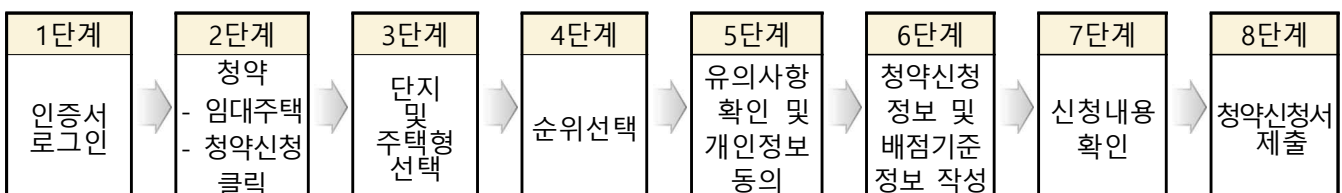
• 인터넷(PC)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③ 인터넷(PC) 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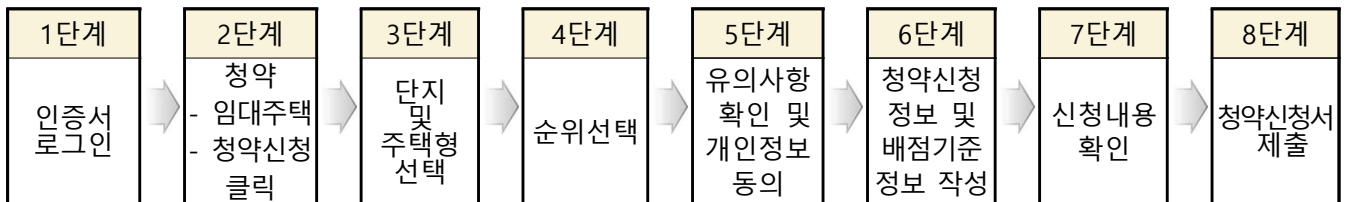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센터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공통 유의사항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성남금토 A-2블록 국민임대주택 , 관리번호 : 2026000321**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b>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b>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b>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b>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성남시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 접수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기 간	'26.7.22(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2분 거리) (버 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구 비 서 류	<input type="checkbox"/> <b>아래 서류와 [7.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b>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 7. 28(화) 17:00 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확인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우측상단 ≡(메뉴) 클릭 → 청약 탭 내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일반우편 접수 불가)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방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기간 : **2026. 7. 29(수) ~ 8. 4(화)** ('26. 8. 4(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 [7. 신청서류] 참고)
- \* 우편발송주소 : (우: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성남금토 A-2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봉투 겉면에 “블록,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미기재로 인한 서류미도달시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07.0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 현장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아래 구비서류, 기본서류, 신청자격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예비배우자 포함)	① (인감증명방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6 공사서식, 인감증명서상의 도장 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할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양식6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b>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li> <li>• 만14세 미만의 <b>세대구성원</b>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b>(동의방법)</b>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각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b>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b></li> </ul>	1통
공 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출대상)</b> 전체</li> <li>• <b>(동의방법)</b>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b>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b>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li> <li>※ <b>(주의)</b>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b>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b></li> <li>•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li> <li>• 미성년 자녀수 배점을 받으려는 경우로써, 주민등록표등본상 <b>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b></li> <li>※ 단, 이혼,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li> <li>•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li>•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지역 <b>거주기간이 전체</b> 표시되어야 함</li> <li>• <b>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li> <li>※ <b>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li> </ul>	1통
해 당 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li>• <b>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b></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남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li> <li>•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li> <li>→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해 당 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1통
	출생증명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로써, 출생 신고 전인 경우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현장방문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종신고신고증, 행방불명신고접수증	• 직계존속의 실종신고, 행방불명의 사유로 미성년 세대주가 공급을 신청할 경우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부 추천 명단에 따름 (국가보훈부에 별도 신청)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사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인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p>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p>												
<p>⑦ 민법상 미성년(19세미만)자인 2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p>	<p>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p>												
<p>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p>	<p>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사·군·구청</p>												
<p>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p>	<p>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p>												
<p>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p>	<p>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사·군·구청</p>												
<p>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p>	<p>국가보훈부 추천 명단에 따름 (국가보훈부에 별도 신청)</p>												
<p>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p>	<p>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사업주체</p>												
<p>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공공주택사업자에 의해 선정된 자</p>	<p>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p>												
<p>⑭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중 공공주택사업자에 의해 선정된 자</p>	<p>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p>												
<p>⑮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p>	<p>시장 등의 추천서      사·군·구청</p>												
<p>⑯ 신혼부부·한부모가족</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27 1267 970 1346"> <p>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p> </td> <td data-bbox="978 1267 1377 1346"> <p>혼인관계증명서(상세)</p> </td> <td data-bbox="1385 1267 1520 1346"> <p>행정복지센터</p> </td> </tr> <tr> <td data-bbox="427 1357 970 1514"> <p>6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p> </td> <td data-bbox="978 1357 1377 1514"> <p>-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임신진단서(확인서) - (해당자) 출생증명서 -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p> </td> <td data-bbox="1385 1357 1520 1514"> <p>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td> </tr> <tr> <td data-bbox="427 1525 970 1682"> <p>예비신혼부부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td> <td data-bbox="978 1525 1377 1682"> <p>-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p> </td> <td data-bbox="1385 1525 1520 1682"> <p>공사 양식</p> </td> </tr> <tr> <td data-bbox="427 1693 970 1783"> <p>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p> </td> <td data-bbox="978 1693 1377 1783"> <p>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p> </td> <td data-bbox="1385 1693 1520 1783"> <p>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td> </tr> </table>	<p>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p>	<p>혼인관계증명서(상세)</p>	<p>행정복지센터</p>	<p>6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p>	<p>-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임신진단서(확인서) - (해당자) 출생증명서 -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p>	<p>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p>예비신혼부부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p>	<p>공사 양식</p>	<p>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p>	<p>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p>	<p>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p>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p>	<p>혼인관계증명서(상세)</p>	<p>행정복지센터</p>											
<p>6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p>	<p>-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임신진단서(확인서) - (해당자) 출생증명서 -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p>	<p>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p>예비신혼부부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p>	<p>공사 양식</p>											
<p>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p>	<p>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p>	<p>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p>											
<p>⑰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p>	<p>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p>												
<p>⑱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p>	<p>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 광업공단</p>												
<p>⑲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p>	<p>성남시 추천 명단에 따름 (성남시에 별도 신청)</p>												

㉔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㉕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사·군·구청
㉖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㉗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행정복지 센터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주자 선정 참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필수서류)으로 확인 (별도 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행정복지 센터
⑥ 중소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 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대상자 결정통지서	성평등 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 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사업주체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26.11.3(화) 17: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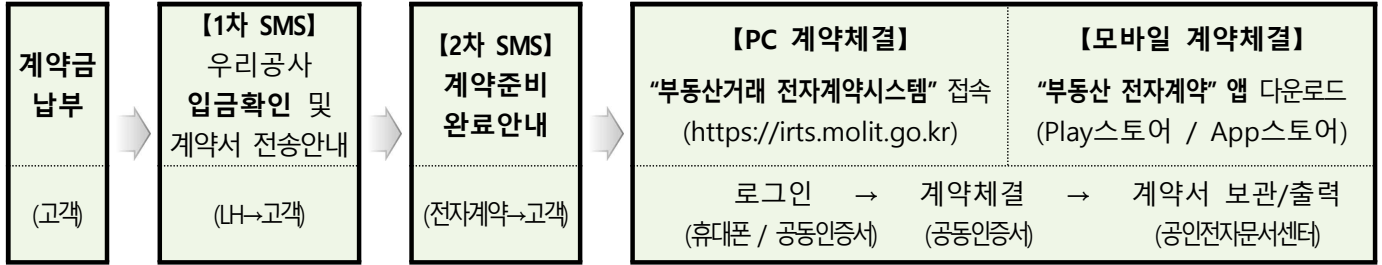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26.11.23(월) 10:00 ~ 11.25(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26.11.23(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계약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서류 미비시 계약 불가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단지 계약과 장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계약장소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li> <li>•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li> <li>•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li>•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 <b>(인감증명방식)</b>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b>(자필서명방식)</b>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li> </ul>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총자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증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1.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b>임대대상 및 조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li> <li>*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2 775 1501 1149">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b>신청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b>공급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li> </ul>																			
<b>중복입주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li> <li>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li> </ul>																			
<b>신청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li> </ul>																			

	<p>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b>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li> </ul>
<b>자동차 등록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li> <li>*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li> <li>•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b>기타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 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ul>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본주택(모델하우스)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외부 여건(지구 내 또는 지구인근의 혐오시설)**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6(2023.12.29.)호로 승인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지구계획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성남금토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교육),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경사로 및 교량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북측에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 내 금토천, 외동천이 위치하고 있고, 지구내 계획된 하천의 경우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수량, 수질에 따라 지구내 하천정비 이후에도 수량이 적거나, 악취가 나거나 수질이 나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오수중계펌프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서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시 지구내 학교개교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음.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성남시청으로부터 반경 약 3km에 위치하고 있음
- 경부고속도로(대왕판교IC), 용인서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과 인접해 있으므로 관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IC 하부의 달래내로가 지구 동서를 연결하며 대상지 인근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음
- 계획지구는 서울공항으로부터 남서측 약 7.0km 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2, 6구역에 해당(A-2BL은 6구역에 해당)
- 본 단지 인근 군비행장이 위치하여 비행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본단지 동남측 반경 약 0.7km 이내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음
- 사업지구 외 본단지 동남측 반경 약 2km 이내에 '폐기물소각시설'이 있음
- 사업지구 외 본단지 북서측 반경 약 6km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음

#### □ 단지 외부 여건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 시설물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적의 위치에 설치(또는 예정)되었음에 따라 다른 위치로 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학생들이 통학 시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별도 육교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아파트 내·외부 구간에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높이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용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 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 195세대, 국민임대 43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에 표현되어 있는 동번호(201동~206동)는 향후 단지명 확정과정에서 부여되는 단지번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서남북향 주택으로 계획되었으며 신청시 주택의 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유아놀이터와 접하는 부위의 단차처리를 위해 조경석쌓기가 계획되어 있으나 각종 계획 변경에 따라 법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경관녹지와 접하는 단지도로 측면에 단차처리를 위한 옹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에 인접한 1층과 저층부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203동과 204동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구조물(문주)로 인근 저층세대 발코니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경광등으로 소음 및 빛에 의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1층에 설치된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1층)가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되어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경사로 등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차량 등의 통행에 따른 악취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상층 주출입구 진입을 위해서 일부 경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3,4동 사이의 지하주차장 입구램프의 층고는 2.3m로 일반승용차를 제외한 화물(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화물(택배)차는 201,6동 사이의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320대, 지상 90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2대이며, 총 412대 중 14대는 장애인 주차장, 20대는 경형주차장, 21대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완속20대, 급속1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됨)입니다.(201동 지상주차장 중 1개소는 근린생활시설 진입계단으로 인해 경형주차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 세대는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승강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 벽 등과 간섭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경비실 등이 있으며,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201동 1층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승하차장, 데크층에 사회적기업, 작은도서관, 202동 1층에 멀티프로그램실, 205동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206동 지하1층에 사회복지관, 1층에 어린이집 등이 설치되며, 시설이용자가 단지를 출입하거나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돌봄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외부(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열기, 먼지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팸플렛의 실외기 설치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동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에서 냄새 및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냄새,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DA, 천창 설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설치되며, 일부 인접 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한전 가공 전선로 인입중으로 추후 지중화 배관 완료시 지중으로 교체 예정)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기계실 및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내부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태양광설비는 모든 동 지붕층에 설치 예정이며, 위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정 및 위성 안테나는 205동 옥탑층에 설치 예정이며, 전파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및 비상시 가동으로 진동,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공간별 주차유도시스템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우편함은 각 동별 설치 예정이며, 동별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놀이터, 쓰레기보관소, 각 동 출입구 등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지피류만 식재 가능)될 수 있으며, 해당구간에 대한 저층 차폐식재는 불가능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법정수량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주요동선 및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인접하게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중복도로 계획되어 맞은편 세대와 동시출입 또는 현관문 개폐 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중복도로 계획되어 현관문 개폐방향이 동일 타입이어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동·호별 위치에 따라 북향, 서향 등 주 채광방향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201동 7층 35A타입(2세대), 202동 6층 26D타입(2세대)는 거실발코니 정면 PIT공간이 있어 세대 내부의 채광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일조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및 상가 입주자(소유자) 상호간 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안테나 : 옥상층(201동, 203동, 205동, 206동), - 중계장치 : 지하3층(201동 PIT), 지하2층(205동 PIT)
- 201동 7층 714호, 716호, 718호는 옥탑에 위치한 세대로 출입문 앞 복도가 복도창호 및 천장 없이 강화접합유리난간이 있는 외부공간이며, 201동 7층 703호, 705호와 202동 6층 604호, 608호는 천장은 있으나 복도창호 없이 강화접합유리난간이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변 공용통행로(피로티)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면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1동 703호, 705호의 발코니창호 양측에는 PD구간으로 돌출벽체가 있으며, 714호, 716호, 718호는 돌출부분이 없고 해당세대 옥상출입을 위한 옥외사다리가 설치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동 연결 구조물(입체보행로\_201동-202동-205동-외부엘리베이터)은 규모 및 연결동

이 바뀔 수 있으며, 입체보행로를 통해서 동과동의 통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동 연결구조물(입체보행로)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202동-205동-206동 중앙에 입체보행가로 사용을 위한 옥외 엘리베이터 코아 구조물이 존재하며 인근 세대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은 타입별로 펜트리형, 가구형으로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미설치되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면 발코니 창은 입면분할 창호로 설치되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시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동 표시·아파트 문양·BI 로고·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층 승강기홀 및 계단실 채광·환기창의 설치여부와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주거동의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목적 외 이용 및 특정세대가 점유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으로 배기팬 모터소음이 덕트를 통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쿡탑은 전기 하이라이트 방식이 적용되며 23타입(영구임대) 및 26~29타입은 2구형, 35~44타입은 3구형으로 설치됩니다.
- 싱크대 하부는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 설치부위는 바닥마감재(룸카펫)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루버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 동절기 등 실외기실의 결로발생 관리를 위한 환기는 루버로 조절해야 하며 그 외 환기구는 없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원활한 공기순환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냉매배관이 미설치되어 에어컨 설치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에어컨은 23~26타입 영구임대에 한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 환기팬 작동시 작동 직후에 뎀퍼가 열리는 동안 일시적인 소음(운전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 또는 단열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벽 부착물은 전용못 또는 앙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또는 벽걸이 에어컨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층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시스템욕실(UBR)로 설치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타입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타입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배수용드레인이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제품사양에 따라 미서기창 탈착 후 발코니에 반입 가능합니다.

- 세탁기 및 건조기는 세탁기 설치공간 협소로 인해 치수를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일부 동(203, 204, 205, 206동)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차압 측정장치가 설치됩니다.
  - 지하층 승강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 : 202동 지하, 전기(발전기)실 및 저수조 설치위치 : 201동 지하]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실외기실에 환기유닛 및 플렉시블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평형(23A(영구임대), 23B(영구임대), 26A1, 26C(영구임대), 44A1) 특정세대(총 98세대)의 실외기실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교차로 설치될 예정이니, 계약 전 팜플렛에서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총 98세대)
- 202동 :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총 4세대)
- 203동 : 203호, 303호, 403호, 503호, 603호, 404호, 504호, 604호, 205호, 305호, 405호, 505호, 605호, 206호, 306호, 406호, 506호, 606호, 207호, 307호, 407호, 507호, 607호, 707호, 807호, 907호, 1007호 (총 27세대)
- 204동 : 203호, 303호, 403호, 503호, 603호, 703호, 803호, 903호, 1003호, 204호, 304호, 404호, 504호, 604호, 205호, 305호, 405호, 505호, 605호, 206호, 306호, 406호, 506호, 606호, 207호, 307호, 407호, 507호, 607호 (총 29세대)
- 205동 : 206호, 306호, 406호, 506호, 207호, 307호, 407호, 507호, 208호, 308호, 408호, 508호, 209호, 309호, 409호, 509호 (총 16세대)
- 206동 : 211호, 311호, 411호, 511호, 611호, 711호, 811호, 911호, 212호, 312호, 412호, 512호, 612호, 712호, 812호, 213호, 313호, 413호, 513호, 613호, 713호, 813호 (총 22세대)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직하층에는 피난상황 발생 시 피난사다리 전개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상부에 환기유닛이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 학교 개교시기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성남금토 사업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 입주 시 지구 내 학교개교가 지연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릅니다.
- 지구 내 학생배치 여건, 학생유입 규모 변동 등 학생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및 교육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초등학생은 (가칭)금토초('27.3월 개교예정,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이후 '금토초'로 교명 확정)에 배치할 예정이며, 중학생은 판교중학군[성남 관내 4개 중학군(분당, 수정·중원, 판교, 위례) 중 판교중학군 내 중학교], 고등학생은 성남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li> </ul>
<p>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세대평면도 등 각종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불법개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퇴거 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동일 주택타입이라도 동호라인에 따라 리플릿과 달리 평면이 대칭되어 시공됩니다.</li> <li>• 본 단지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li>•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li> <li>•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샷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샷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li> <li>•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계약 발생 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ul>

##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 공동주택성능등급

#### 1)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2)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해당없음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3)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4) 생활환경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해당없음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초고층경보통신건물인증	★★
방범안전 콘텐츠	★

#### 5)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 13.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성남금토 A-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보건설(주) 극동건설(주) (주)대저건설	-	마인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지디엔지니어링, 한국나이스기술단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급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청각장애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세대단말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전기국립 설치에 따라 가스밸브 높이 조정 미적용됩니다.

####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임대문의 및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용상담전화 : 031-250-8483 ('26.7.22.까지 상담 가능)</li><li>•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b>1600-1004</b>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li><li>• 인터넷 - 마이홈포털 (<a href="http://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a>) - LH청약플러스 (<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li></ul>
당첨자 ARS	<b>1661-7700</b>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P C : LH청약플러스(<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li><li>·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li></ul>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7. 08



경기남부지역본부